

## '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

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/ 수탁기관 선정기준 /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/ 기타

---

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각 수탁기관은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개정 (시행 '22. 8. 22.)

- 수탁기관 종사 특별채용 시 가족채용 제한 (82쪽)
-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(84쪽)
-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 마련 (86쪽)

### 2.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정 (시행 '22. 8. 22.)

-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기준 추가 등 (181·186쪽)
-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(186쪽)
-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(47쪽)
-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의 공모 참가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(46·183쪽)

### 3.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(시행 '22. 8. 22.)

-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(52쪽)
-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(103쪽)
-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(104쪽)

### 4. 기타 주요 개정사항

-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(17쪽, 시행 '23. 1. 1.)
-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(25·57쪽, 시행 '23. 1. 1.)
- 수탁기관 장, 인사·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·노무 분야 의무교육 (102쪽, 시행 '23. 1. 1.)
-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 — 조례개정('21. 12.) 사항 (27·56쪽, 기 시행 중)
-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주요내용 반영 (87쪽, 기 시행 중)
-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(99쪽, 기 시행 중)
- 주요 질의답변 및 감사사례 추가 (117쪽)